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2. 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감경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정비(안 제6조의2 신설)

생계급여 수급자, 부정지원금 등 반환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제외 대상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개선(안 제2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감액 사유를 기존 부정수급행위의 자진신고 외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2022.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3 및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제외 대상)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소득수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제6조의3(종전의 제6조의2) 본문 중 “영 제16조제2항”을 “영 제16조제4항”으로, “근로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제외 대상) 영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소득수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 한도)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	제6조의3(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 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

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생략)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신설>

----- 사람 -----
-----.

-----.

제6조의4(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현행 제6조의3과 같음)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생략)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사실(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u> 2. <u>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u> 3. <u>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